

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4. 2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4. 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1999. 4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원미구보건소장 이법석)

가. 제안이유

○ 의료법 제62조제3항 규정 및 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고보조액의 지원에 관계없이 축탁의료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개정함.

나. 주요골자

○ 국고보조액 50% 미만인 연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조례 제2조 규정에 배치되므로 폐지하고자 함(안 제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축탁의료인 의뢰가 많이 있는가요?	○ 과거 의사가 귀할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인근 의사에 축탁의뢰 했는데 이 규정은 초창기 규정이며 현재는 사문화된 규정입니다.
○ 국고보조를 못 받아도 보수를 주어야 하는가요?	○ 지방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지만 현재는 지방비가 있습니다.

<p><input type="radio"/> 한방의료인은 촉탁인가요?</p>	<p><input type="radio"/> 조례에 의한 촉탁인이 아니고 일용인 성격입니다.</p>
<p><input type="radio"/> 촉탁의뢰인이 관내에도 많이 있는가요?</p>	<p><input type="radio"/> 현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열악한 곳은 공중보건의로 대체 지원하고 있습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시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139 호
의결년월일	99. 4. 15 (제70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4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의료법 제62조제3항 규정 및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의료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고보조액의 지원에 관계없이 촉탁의료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개정함

주요골자

국고보조액이 50% 미만인 연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같은 조례 제2조 규정에 배치되므로 폐지하고자 함.(안 제5조)

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제 호

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급정지) 이 보수의 지급을 위하여 보조되는 국고보조액이 50% 미만인 연도에는 이 조례가 규정하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